

「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2. 시행)으로 위임조례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1조, 제7의2조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기간에 관한 조문 정비(안 제7조제2항)
- 특별위원회 상시적 운영을 위해 일시적 요건 삭제(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)
-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사항 의무화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 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총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둔다”를 “두되,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,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

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에 따라</u> <u>고흥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은 선 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<u>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</u> <u>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5조(위원의 임기) ①----- ----- --- <u>지방의회의원 총선거</u> 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생 략) ②<u>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(신설 2006.9.29, 개정 2014.8.20.)</p>	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
<p>③<u>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전까지 심사결과 또는 활동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(신설 2006.9.29, 개정 2014.8.20.)</p>	<p>③<u>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④ 의회는 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(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⑤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·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⑥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<신 설>

② -----

----- 두되,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,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

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